공정거래위원회

보도자료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1월 29일(월) 배포

2021년 11월 30일(화) 조간부터 보도가능
방송·인터넷 매체는 11월 29일(월) 낮 12시

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
담당과장: 전성복(044-200-4932)
담당: 강대준 사무관(044-200-4937)
문정선 조사관(044-200-4945)

2021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

- 광고·판촉행사 사전동의제, 가맹점단체 등록제 등 도입 필요 -

□ **공정거래위원회**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200개 가맹본부와 12,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**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**했다.

[조사 결과]

□ **거래관행이 개선**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**86.6%**, **가맹분야 정책에 만족**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**87.9%**로 높게 나타났다.

□ 다만,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·판촉행사 실시,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,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 하락 우려,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, 관련 **제도 보완** 및 **시장 감시 강화**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○ **(광고·판촉행사) 가맹본부**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**일방적으로 광고·판촉행사를 실시**하는 비율이 **광고**는 **45.4%**, **판촉행사**는 **43.2%**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이와 관련하여, 광고·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**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**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**약 97%**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.

○ **(가맹점단체)** 가맹점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.6% 수준이며, **가맹본부**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**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거절**한 비율이 **29.7%**로 나타났다.

○ **(온라인 판매) 직영 온라인몰**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**18.1%**, 기타 **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**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**20.1%**로 나타났다.

-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, **온라인 판매**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**가맹점주와 협의**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**33.0%**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○ **(부당한 거래 경험)** 가맹본부가 **예상매출액** 정보를 **과장하여 제공**(13.3%)하거나,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(13.0%)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.

[향후 계획]

□ 공정위는 ▲광고·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, ▲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**가맹사업법 개정안**이 **국회에서 조속히 통과**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**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**할 계획이다.

○ 이와 함께,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가맹점 창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하여, **가맹점 창업 단계**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시장 감시를 강화**해 나갈 예정이다.

1 조사 개요

□ **(조사대상)** 치킨, 편의점,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**가맹본부 200개**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**가맹점 12,000개**를 대상으로 실시했다.

□ **(조사방식)**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**누리집, 이메일** 등을 통해 미리 마련된 **설문에 응답**했다.

2 조사 결과

1. 거래관행 개선 체감율 및 정책만족률

□ 이번 조사 결과, 가맹분야의 불공정 **거래관행이 개선**됐다고 응답한 **가맹점주 비율**은 **86.6%**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.

* ('19년) 86.3% → ('20년) 87.6% → ('21년) 86.6%

○ 또한, **가맹분야 정책에 만족**한다고 응답한 **가맹점주 비율**도 **87.9%**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.

* ('19년) 83.4% → ('20년) 87.5% →('21년) 87.9%

□ 이와 같은 가맹점주의 **긍정적 평가**는 ▲**가맹사업법령 개정**, ▲**표준 가맹계약서 확대 보급**, ▲**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** 등 다양한 **정책적 노력**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**자발적 상생노력**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.

2. 광고 · 판촉행사 관련

□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,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**일방적**으로 **광고·판촉행사를 실시**하는 **가맹본부 비율**이 **광고**는 **45.4%**, **판촉행사**는 **43.2%**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이에,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·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, 가맹본부가 **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**고 응답한 **가맹점주의 비율**이 **광고**는 **96.4%**, **판촉행사**는 **97.7%**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.

□ 한편,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, **평균적으로 광고**는 **80.6%**, **판촉행사**는 **82%**의 가맹점주로부터 **사전동의**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3. 가맹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

□ **가맹점단체에 가입**한 **가맹점주의 비율**은 **39.6%**로 나타났다.

ㅇ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,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**협의를 거절 당한 경험**이 있다고 응답한 **가맹점주**의 **비율**은 **29.7%**로 나타났다.

□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(18.5%),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(13.0%), 판매상품 개편(11.1%), 광고·판촉행사 진행(11.1%) 등으로 분석됐다.

4.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관련

□ **가맹본부**가 **직영 온라인몰**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**18.1%***로 나타났고, 기타 **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**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**20.1%***로 나타났다.

* 직영 온라인몰과 기타 온라인 플랫폼/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, 중복으로 응답

ㅇ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, **온라인 판매**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**가맹점주와 협의**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**33.0%**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.

□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**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**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**가맹본부 비율**은 **23.4%**로 나타났다.

ㅇ 대표적 지원 내용은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 등으로,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ㅇ (사례1) 특정 오프라인 가맹점을 단골 매장으로 등록한 고객이 직영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, 결제 금액의 일부를 그 가맹점에 현금으로 지원

ㅇ (사례2) 직영 온라인몰 외에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동일한 판촉행사(사은품 증정, 가격할인 등)를 실시하도록 하고, 가맹본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

5. 부당한 거래 경험 관련

□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**부당한 거래를 경험**했다고 밝힌 **가맹점주 비율**은 **39.7%**로 나타났다.

○ 특히, ▲가맹본부가 **예상매출액**에 관한 **정보** 등을 **과장하여 제공**(13.3%)하거나, ▲가맹본부가 **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**(13.0%)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.

□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해, **가맹점 창업 단계**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집중 감시할 필요성**이 확인됐다.

3 향후 계획

□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·판촉행사 실시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,

○ ▲광고·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, ▲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**가맹사업법 개정안**이 **국회에서 조속히 통과**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□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**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**할 계획이다.

□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**불공정 거래 혐의**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**직권조사 등을 실시**할 예정이다.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ftc.go.kr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